

#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4.23]  
[법률 제11506호,  
2012.10.22, 일부개정]



## 【개정이유】

### [일부개정]

##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의무축산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,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## 【개정문】

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(인)

2012년 10월 22일

국무총리 김황식

국무위원 농림수산물부 장관 서규용

### ◎ 법률 제11506호
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
법률
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,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